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유 향 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5. 교육시설 기준령

1984년 8월 2일자로 개정된 법률 제 3739호에 따른 교육법 중 개정법률을 보면 교육법 제 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리구역안의 의무교육 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킴에 필요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설치·경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그 관해구역안의 의무교육 학령대상아동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를 설치·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립이나 사립의 중학교에 학령대상아동의 일부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1984년 8월 2일자 대통령령 제 11481호로 개정된 각급학교 시설·설비 개정제안 이유를 보면 현재에는 각급학교의 체육장, 교실 등에 갖추어야 하는 설비 등의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문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하며 이들 기준을 교육내용의 변천, 새로운 교구 및 기자재의 개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시청각자료에 관한 기준을 법률 제 528호로 교구에 관한 기준을 법률 제 531호로 각각 폐지시켰다.

각급학교 시설에 관한 기준은 점차로 사회변화에 적응적이고 교육현장에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교육용지·각종교실·각종서비스시설에 설치될 교구·기기·자료 및 급·배수 등의 건축설비의 설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다목적·공용적인 기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A. 각종교육용지

1) 실습지

「학교시설·설비 기준령」⁹⁾ 제 4 조는 중학교……실업교과 중 농업을 선택하는 학교는 실습지를, 수산을 선택하는 학교는 양어장을 두도록 기준하고 있으나, 이들 실습지(장)를 실업교과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공용하도록 건축조

건, 시설·설비의 설치 및 공용방법·공용영역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습지는 법적으로 다목적·공용적 시설이 아니다.

2) 운동장 및 수영장

동기준령 제 3 조에 의하면 각급학교 및 유아원 운동장(유희장)에 환경위생을 고려한 건축설비를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다. 동시에 각급학교 체육장의 규격은 한번의 길이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130 m 이상 이어야 하지만 보도 또는 차도의 거리로 2km 이내에 학교·공원·광장·기타 시설물에 직선길이 130 m 이상의 체육장 시설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관련된 시설물을 공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구내에 2개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한 경우에 체육장을 겸용할 수 있고, 수영장은 제 10 조에 의하여 권장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장은 인근학교와 또는 지역사회와 공용할 것을 법으로 중용하고 있다.

B. 각종교실

1) 학급교실

동기준령 제 5 조에 의하면 보통교실을 1학급당 실면적의 기준(66㎡) 만을 정하고 있다. 제 12 조는 유아원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유아원 사이에 공용을 정하고 있다. 제 1 항은 학교·교회·기타의 시설을 이용하여 유아원을 설치할 경우, 그 이용하는 시설의 제 3 조 제 4 항, 제 5 조 제 9 항 및 제 8 조에 규정한 시설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원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 2 항에 따르면 유아원은 제 3 조 제 4 항 및 제 5 조 제 9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습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희장과 유희실, 보통교실과 유희실을 서로 겸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 5 조 제 4 항에 의하면 국민학교·중학교 모두가 실험실·실기실·실습실을 설치하기 전에 학교당 학급수에 관계되는 학급수에 따라서 학급교실을 대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실험·실습·실기실

동기준령 제5조 제2항에서 과학교재에 필요한 특별교실과 그 준비실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에서는 강당설치에 대한 규정을, 제2항에서는 체육관설치에 대한 규정을 제8항에서는 어학실습실을, 제5조 제2항에서는 중학교 가운데 실업교과 중 농업을 선택하는 학교는 실습지 부속사 및 농업 실습실을... 각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실습·실기실은 보통교실과 통합계획 될 수 있고, 동시에 개방계획될 수 있도록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각종서비스시설

(1) 도서실

동기준령 제5조 제6항은 도서실의 관람 좌석수와 비치 도서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민학교의 경우 보통교실을 도서실로 겸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1학급당 3석을 설치하고 학교당 20석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실 규정에서는 통합계획이나 개방계획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여러 가지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또는 생활영역인 취미생활, 정서생활 및 근로생활과 관련된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는 규정은 없다.

(2) 지원시설

교사중심의 지원시설 : 동 기준령 제5조 제1항 8은 관리용 각실 가운데 교장실, 사무실, 숙직실, 창고 등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무실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학교중심의 지원시설 : 동 기준령 제5조 제1항 9는 보건위생에 관한 각실 가운데 양호실, 변소,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의 설치를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급식시설, 온수공급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양호실은 학교당 1실 이상을 설치하되 관리용실로 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은 학교당 각 1실 이상을 설치하고 국민학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전체적으로 통합시설 기준은 없으나 운동장·보통교실의 경우와 같이 학

교간에 지역사회간에, 또는 학교안에서 교과영역, 생활영역간에 개방시설기준은 규정되어 있다.

유아원의 경우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건물, 교회건물, 일반건물이 환경위생상 지장이 없고, 교육상 지장이 없으며 건물 본래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유치원 건물로서 공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내부에서도 학급교실이 실험실, 실습실, 실기실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더우기 특별활동영역, 생활영역에서 활용되는 시설의 개방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급학교 기준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의 문제를 년차적으로 보완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시설의, 각급학교시설의 상호간에 통합성과 개방성을 넓히는 기준을 보강하여야 한다.

Ⅲ.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실태조사에 응한 296개교는 표본집단 514개교의 58%에 해당된다. 학교별로는 유치원 73개교, 국민학교 126개교, 중학교 97개교가 실태조사에 응하였다. 설립별로는 공립이 제일 반응율이 높았고, 학교당 학급수는 유치원의 경우 1~12학급, 국민학교의 경우 19~24학급, 중학교의 경우 19~30학급의 학교가 제일 높은 반응을 보였다.

각급학교 건물은 1950년대부터 전반적으로 건축률이 증가하였다가 1970년대에 약간 감소하였으며, 다시 1980년대에 70%가 증가하였다. 특히 각급학교 가운데 유치원교실은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축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같은해에 국민학교들은 다른해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율로 학교가 건축되었다. 중학교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건축률이 높아졌다.

2. 자료분석

1) 각종 교육용지

(1) 실습지와 자연원

실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은 39.5%, 국민학교는 25.8%, 중학교는 20.7%,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급 학교 사이나 지역사회 또는 학교내부에서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생활영역을 위해서 실습지를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연원은 38% 이내의 학교만이 설치하고 있어 자연원의 다목적 교육은 62% 정도의 학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간구조는 전체적으로 개방적이고 규모는 소형이며, 재료는 안정성이 있으며 색채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설계는 유치원의 실습장(양어장) 및 동물원을 제외하고는 실용적이다. 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인근학교와 공유가 불가능하다.

특히 실습지나 자연원은 12.7%만이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을 뿐 그외의 필요한 건축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은 전무하다. 관리상태도 84.5%의 학교가 교육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2.9%의 학교가 실습지를, 또는 3.3%의 학교가 자연원을 학교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용하고 있다.

(2) 운동장과 수영장

유치원 21.2%, 국민학교 23.0%, 중학교 22.6%가 운동장내에 트랙·모래장·구기장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77.7%가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0.6%의 학교가 운동장을 건축조건상 그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45.5%의 각급학교장들은 운동장이 위생적이라고 하지만 55%의 학교가 단지 급·배수설비만을 설치하고 있어 위생상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시에 28.4%의 학교운동장만이 교육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유치원 26.9%, 국민학교 31.7%, 중학교 32.3%가 예능계열·사회계열 등의 순으로 교과영역에서, 특별활동영역에서, 생활영역에서 공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슷한 비율로 지역사회와도 또는 인근학교와 공용하고 있다.

단 수영장은 국민학교 4.6%를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각종교실

(1) 1 학급교실

교과활동을 할 수 있는 학급교실은 유치원 56.5%, 국민학교 59.9%, 중학교 38.7%, 특별활동의 경우 유치원 25.3%, 국민학교 18.4%, 중학교 20.6%, 학급생활의 경우 유치원 24.4%, 국민학교 7.2%, 중학교 25.6%에 해당된다. 따라서 24.6%, 학교의 학급교실이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하고 있다.

학급교실은 전반적으로 건축구조가 개방적이어서 쉽게 교실을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중형에서 소형 쪽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약받을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35.9%가 건축재료, 색채, 설계 등에서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50%정도의 학교가 위생면을 고려하고 있다. 관리면과 활용효과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학급교실은 50%이내의 학교만이 다목적성 또는 공용성을 지니고 있다.

(2) 실험·실습·실기실

실험실: 어학실험실은 국민학교 5.8%, 중학교 9.9%가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구조는 개방적이고, 규모는 중형이다. 건축재료, 색채는 안전권에 있으며 설계는 실용적이다. 학교안에서 언어계열 교과 영역과 학생회, 클럽활동, 취미생활, 정서생활을 위해서 공용하고 있다.

과학실험실은(또는 자연실) 유치원 28%, 국민학교 26%, 중학교 32.5%가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모두 획일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 33.4%가 위생적이며, 56.7%가 교육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60.8%가 자연계열과 클럽활동 및 취미생활 등에서 과학실험실을 공용하고 있다.

실습실: 유치원 2.4%, 국민학교 2.9%, 중학교 11.1%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고, 평균 6.4%가 개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규모는 소형에서 중형이다. 실습실은 전체적으로 8.1%의 학교가 학교안에서 실업계열, 클럽활동, 취미생활, 근로자생활·정서생활 영역에서 공용하고 있다.

실기실: 음악실은 유치원 15.5%, 국민학교 9.2%, 중학교 43.1%의 학교가 보

유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중형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14.5%가 공능계열에서, 중학교의 경우 3.9%가 실업계열에서 또는 특별활동영역에서 공용하고 있다.

미술실은 유치원 1.6%, 국민학교 3.9%, 중학교 12%가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소형이다. 건축재료, 색채, 설계는 실용적이며, 위생적이다. 미술실은 모두 학교내에서 공용하며, 예능계열 뿐만 아니라 실업, 사회, 특별활동영역에서 공용하고 있다.

체육실은 유치원 6.2%, 국민학교 5.8%, 중학교 8.2%가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건축구조는 개방적이며, 규모는 중형이지만 유치원은 비교적 대형이다. 체육실은 학교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공용하고 있다.

3). 각종서비스시설

(1). 도서실

도서실을 보유하고있는 학교는 유치원 28.2%, 국민학교 30.3%, 중학교 24%이다. 도서실내에 공간종류는 열람실, 자료실, 시청각 교육시설의 순으로 보유하고있다. 건축구조는 전망적이고, 규모는 소형에서 중형이며, 재료는 모두 안전하며, 색채는 정서적이며, 설계는 실용적이다.

그리고 유치원 17.8%, 국민학교 20.9%, 중학교 18.6%만이 도서실의 활용효과를 높이고있다. 도서실은 지역사회와는 2.7%만이 공용하며, 20.1%가 학교내에서 사회계열, 특별활동 영역에서 공용하고있다.

(2). 지원시설

교사중심지원시설: 유치원 24.6%, 국민학교 32.5%, 중학교 31.4%가 보유하고있으며, 비교적 개방적이고 소형에서 중형을 지니고 있고, 재료는 안전하며, 색채는 안전감이 있으며 설계는 실용적이나 그 활용효과는 32.9%이다.

교무실: 서무실은 33.6%의 학교만이 학교내부에서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생활영역 전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에 필요한 교직원을 편성하고 지휘하여 교육프로그램 전체를 조정 또는 통합해서

평가하는 학교교육경영상의 공용공간을 보유하고있다.

학생중심지원시설: 유치원 6.7%, 국민학교 3.9%, 중학교 15.3%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개방적이며, 규모는 소형에서 중형이고 건축재료는 안전하며, 색채는 정서적이고 건축설계는 실용적이다. 그러나 5.7%만이 활용효과를 보이고있다. 학생실은 대부분 학교안에서 공용하며,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학생생활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용되고 있다.

학교중심지원시설: 양호실

양호실은 환경위생 조사코너, 환경위생자료코너, 공중보건조사코너, 공중보건자료코너로 나누인다. 이러한 양호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3.6%에 불과하다. 이공간은 개방적이며, 규모는 소형이고, 건축재료는 안전하며, 색채는 안전감을 주고, 설계는 실용적이다. 활용효과는 전체의 1.4%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공용성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수위실·관리실은 12.4%의 학교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개방적이며 소형에서 중형이고 비교적 실용적이다. 그러나 학교안에서 관리상 학교행사에서 공용하고 있으나 전체 학교가 이러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있다.

화장실은 건물층마다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농촌보다 도시가 우세하고, 반면에 화장실 별동을 가진 경우는 도시보다 농촌이 우세하다. 이것은 소변소 대변소의 경우 마찬가지 이다. 전체적으로 소변소는 유치원 27.1%, 국민학교 21.3%, 중학교 15.8%가 충분한 보유수를 가지고 있고, 대변소는 유치원 28.7%, 국민학교 23.1%, 중학교 17.2%가 충분하다. 규모는 대부분 중형이고 건축재료는 안전하며, 색채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위생설비 설치는 전체의 14.2%이어서 환경위생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화장실은 의도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용하지는 않는다. 수시로 용무가 있는지 역사사회인 또는 그외의 사람들이 공용하고 있다. 동시에 생활훈육현장으로서 활용되고있다.

IV. 논의

1. 건축조건 및 설치조건

앞에서 분석한 조사자료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결정하는 건축이윤으로서 건축구조·건축설비·실내에 설치하는 공간시설인 교구·기기·자료들이 각종교육시설에 어떻게 통합적으로 설치되며, 동시에 개방적으로 설치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건축구조가 개방적 통합적이면 건축규모·건축재료·설계·색채 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다.

둘째, 교육시설 자체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관한 자료다.

건축구조가 통합적이라면 교실과 교실을 구분하는 벽체가 대단히 이동적이어야 하며 이와같이 벽체를 이동하려면 자연히 건축자료는 가볍고 사람의 손이 자주 접촉되는 벽체이므로 안정성을 갖는 재료로서 결정되게 된다. 건축규모는 벽체가 이동된 후의 상태와 그 이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역시 건축구조의 통합성은 건축물의 기능을 다목적·공용적으로 발휘시킨다. 만일 건축구조가 개방적이 되려면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천정·바닥이 서로 입체적으로 완전히 연결시키지 않고 벽은 벽으로서의 기능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이 슬레잡기를 할 수 있고, 비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낮은 벽을 하여야 한다. 또한 낮은 벽체에 구멍을 뚫어서 아동의 놀이기구 역할도 할 수 있다. 바닥은 평면인 부분과 굴곡이 있는 부분을 두는 경우도 다목적이어서 개방성의 효과는 대단히 크다. 천정의 면도 전등만을 달아놓는 기능만이 아니고 계시판의 역할도 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우연히 천정을 바라다 본다고 했을 때 하늘을 그린 천정이 라면 빈 천정보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결국 건축구조의 통합성·개방성은 교실의 물리적 환경을 학습환경으로도, 집단생활을 하는 조직적인 환경으로도, 개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간이용 칸막이(소위 이동식 벽체)로 싼 환경일 수도 있다.

건축설비의 통합성은 하나의 실내에 여러가지 설비를 각각 설치하였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설비를 하나의 셋트로 설치하였을 때 이들의 동일기능을 발견하게되며, 동시에 중복된 설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설비의 썸타를 중심으로 모든 교실에 설치되어있는 장치를 통해 조절을 받게되면 역시 경제적인 반면에 설비자체는 통합적이면서도 개방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건축설비의 통합성·개방성은 공중보건(Public Health)을 위해서 환경위생면을 지켜주고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헤르쯔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론」(Motivation-Hygiene Theory)⁴¹⁾과 일치하는 이론이 된다. 실내에 설치되는 교구·기기·자료는 책·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실험기기·실험자료 등을 직접 학생이 만지며 보고,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빈 교실에서 학생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강화적이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은 교육시설을 다목적·공용적으로 기능화 시킨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종교육용지, 각종교실, 각종서비스시설은 대단히 다목적·공용적이다. 지금까지 운동장이나 학급교실 또는 도서실만이 다목적·공용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특별교실로 명명하고 있는 교실들을 통합하여 「실험·실습·실기실」이라는 하나의 썸타로 설계해서 서로 직접 경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게 되면 이것 역시 실내에 건축설비를 통합했을 때 처럼 중복된 교실의 기능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와같이 모든 시설을 집단화하여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다목적·공용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

도시 유치원 시설의 건축구조는 내용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개방적이고, 건축설비 또한 20가지 시설의 종류 가운데 13가지의 시설이 10종류 이상의 건축설비가 1실에 집중되어 있다. 교구·기기·자료 또한 기본적인 것만 설치되어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수가 시설내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0% 이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도 우리나라 학교의

대부분이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결정하는 건축 및 설치조건이 부재이기 때문에 시설의 기능부재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지역별로 구분해 볼 때 농촌 유치원은 교무실·과학실 등에만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실에는 전무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그나마도 설치되어 있는 학교수는 5%이내의 학교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로 갈수록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수는 모든 시설에 걸쳐서 고르게 설치되어 있으나 문제는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단지 3.5%이라는 점이다.

결국 건축설비와 시설은 모든 시설내에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학교안에서조차 거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교육시설 기준령에 비추어 본 현황

기존 교육시설은 아직도 학습중심이 아니고 교원중심이며, 통합적·개방적이지 않고 개별적·폐쇄적이다. 그러나 각종 교육용지·각종교실·각종서비스시설은 전체적으로 볼 때 27.2%만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72.8%의 학교는 시설부재로 교육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공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공교육의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여야만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시설비를 절감시킬 수 있느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시설을 학교간·지역사회간 또는 학교내부에서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하도록 통합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27.2% 학교의 시설은 10% 정도만이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시설에서는 기능적인 계획을 강하게 강조해 왔다.⁴²⁾ 기능적인 학교설계의

41) Paul, Hersey & Kenneth H. Blanchard,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77), P.308.

선행조건은 현대교육원리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설을 통합하고 개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대지를 줄이고 중복된 시설을 피하여 경제적이고 교육효과적인 개념을 갖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이고 교육효과적인 시설이란 학습자의 사회성을 개발시켜서 소속감 또는 안정감을 주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학교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실험, 실습, 실기를 하는 경우보다 좀더 광범위한 지역사회시설에서 경험하므로써 사회성은 좀더 넓고 깊게 개발되기 때문에 다목적, 공용적 시설은 아동의 사회성을 개발하는데 물리적 척도가 된다.

이러한 물리적 척도인 다양한 시설과 관련된 아동의 심리적 소속감·불안감을 강조한 사람은 루츠(Ruch, 1958)⁴³⁾ 제실드(Jersild, 1950)⁴⁴⁾ 호록크스(Horrocks, 1962)⁴⁵⁾ 타너(Tanner, 1971)⁴⁶⁾ 브레인, 존스 그리고 심프슨(Blain, Jones and Simpson, 1975)⁴⁷⁾ 등이 있다.

이와같이 「사회성 개발」을 위한 학교 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은 각종교육용지, 각종교실·각종서비스시설이 “아동집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일 때 발휘된다”⁴⁸⁾ 다양한 공간이란 아동집단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 교과활동, 특별활동, 생활영역에서 개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동시에

“아동은 학습능력, 신체적, 발달, 지각, 언어, 사회적·정서적 적응, 태도, 지능, 관심, 학습과목에 관련된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 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각급학교의 시설과 지역사회 시설을 동일구내에 설치하는 방법을 현대교육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결국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시키는 방법이 된다.

1). 유치원 시설

시설 기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은 인근학교나 지역사회와 공용시키기 보다 학교내부에서 공용하도록 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과 비교해 볼때 기존 유치원 시설도 학교내부에서 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기할 점은 각종서비스시설이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미흡하지만 반면에 실습지, 자연원은 도시보다 훨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 국민학교 시설

모든 시설이 교과영역에서 공용하기 보다는 특별활동 및 생활영역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공용되고 있으며, 시설 기준령과 비교해 볼때, 각종교육용지는 지역사회와 공용하고 있으나 교실 및 서비스

시설은 학교내부에서 공용되고 있다.

3). 중학교 시설

운동장을 제외한 각종교육용지는 지역사회와 공용하지 않으며 특별활동, 생활영역에서도 거의 공용되고 있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각종교실은 학급교실 뿐만 아니라 실기실이 교과 및 특별활동 그리고 생활영역에서도 공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교실 및 각종 서비스 시설은 가장공용범위가 다양하다.

-
- 42) Basil Castaldi, *Op. cit.*, P. 19.
 - 43) Floyd L. Ruch, *Psychology and Life* (Chicago; Scott Foresman and Co., 1958), P. 138.
 - 44) Arthur T. Jersild, *Child Psychology*, (New York; Prentice-Hall, 1950), P. 185.
 - 45) John E. Horrocks, *The Psychology of Adolescents*, (Boston; Houghton Mifflin, 1962), P. 137.
 - 46) Laurel N. Tanner, et.al.,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1), PP. 148~150.
 - 47) Glenn M. Blain, R. Stewart Jones, and Ray H. Simpson, *Educational Psychology*, (4th ed.), (New York; The Macmillan Co., 1975), P. 313.
 - 48) Basil Castaldi, *Op. cit.*, P. 21.